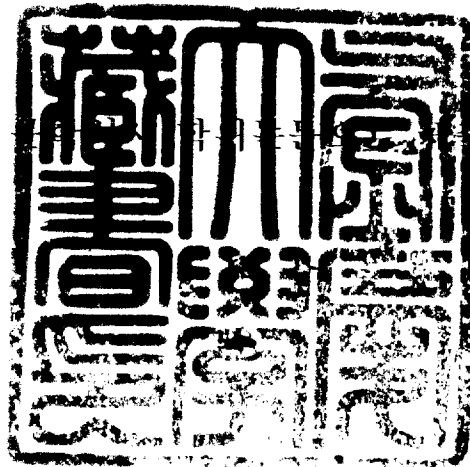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日本人의 人口流入과 社会活動에 대한 史的考察
- 3항(부산·원산·인천)개항을 中心으로 -

지도교수 신 중 대

이 논문을



출함

2005년 2월

釜慶大学校大学院

日語日文学科

李 光 宰

李光宰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12월

주심 김 상 규 (인)

위원장 장 상 언 (인)

위원 신 중 대 (인)

목 차

I. 서론	1
II. 강화도 조약과 부산의 개항	4
1. 부산의 개항	4
2. 원산의 개항	10
3. 인천의 개항	11
III. 부산지역 일본인의 유입 및 인구 형태	15
1. 일본인의 부산 유입	15
2. 일본인의 주거지 획득과정	26
3. 일본인의 토지소유과정	35
IV. 일본인들의 조직 변화상과 활동	43
1. 기류민들의 변화	43
2. 사익분야와 문포	47
V. 결론	52
참고문헌	56

I. 서 론

19세기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공업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 내적 요인에 의해 근대도시가 발전되어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세의 압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도시의 구조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면서 자체적인 발달을 했다고 보다는 타의의 압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채 겪게 된 새로운 서구 문물도입의 진통과 계속된 국내정치의 불안 속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도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지역 공간구조에 상관없이 외세의 영향력에 따라 반 타율적인 성장과 변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특히 최초의 개항항 이기도 한 부산은 일본이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부산은 개항 당시 100명 미만의 일본인이 거주하던 것에 비해 해방 직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일본인 인구의 증가를 보여 왔다. 이에 부산은 타 지역보다 일제의 시설들과 일본인 중심으로서의 도시형태가 갖추어 지고, 전 국토를 출발점으로 하는 전초 기지인 동시에 군수 물자 운송 수단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철도, 항만, 조선 등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산의 곳곳에는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연구는 ‘식민자의 지배와 피지배 민족의 저항’이라는 시각 속에서 주로 다루어져왔지 정작 그 지배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발전시켜오지 못한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항 전 조그만 항구에 지나지 않았던 부산이 일제 침략에 의해 많은 것이 변화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는지 또는 후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일제시기의 식민정책을 연구하면서 식민 지배 집단의 내부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면 식민정책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 식민지 전에 3항(부산·원산·인천)의 개항과 부산 지역에 있어서 일본인과 부산 사람의 인구 형태와 주거지획득과정, 그리고 거류지 내의 일본인들의 조직 변화상과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강화도조약 이후 3항의 개항과 부산의 개항사(開港史)를 보고 둘째, 일본인들의 부산 유입과 인구구성, 직업형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셋째, 인구의 유입과 함께 대두되는 주거지 획득과정과 토지 매입과정을 고찰하고 넷째, 일본인들의 조직 변화상과 활동에 대하여는 거류민들의 변화와 일본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로 여러 가지 단행본과 기사자료, 한국개항사, 연구논문 등의 연구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항 후 급격히 늘어나는 토지와 가옥에 대한 일본거류민들의 수요는 만성적인 용지난(用地亂)에 봉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1880년대 초 무렵부터 이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부산항 북빈(北濱)에 대한 매축론(埋築論)이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釜山市史』와 『港都釜山』 등에 일반적인 것만 소개되고 있는 정도일 뿐 그 기획과 실행을 둘러싼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북빈 매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정과정과 거류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상도사정』¹⁾을 참고하였고

1) 『慶尙道事情』은 경상남북도 중에서도 재부산제국영사관 관내의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기록해 적어놓은 것이다. 이는 1904년 초여름경에 경부철도공사를 시찰하는 것을 계기로 그 해당지를 여행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한국정부와 문물의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속에 기록이 없다는 상황 하에서 통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인구의 유입과정과 함께 시대 정치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해석해 놓은 류교열(2002)의 「부산 일본인전관거류지와 북빈 매축에 관한 연구」²⁾를 참고하였다.

또한 거류지의 설정이나 확대, 거류민의 국가별 상황과 거류민회의 조직과 운영상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현중(1977)의 「개항장감리서와 거류지치폐에 관한 연구」³⁾를 참고하였으며, 전관거류지내의 주거지 확장과정과 주택의 건설 및 건축양식의 유입경로 등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는 허만형(2001)의 「부산지역 일본인 주거지내의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의 유입경로에 관한 연구」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외에도 부산지역 일본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학회지와 학술발표지등을 참고로 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2) 류교열 「부산일본인전관거류지와 북빈 매축에 관하여」 『일어일문학』 제17집 2002 : 일본전관거류지내의 폭발적인 일본인과 물류량의 증가와 함께 파생된 다양한 시원적인 근대 도시문제 중에서도 그 근간이 되는 용지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3) 이현중 「개항장 감리서와 거류지 치폐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4) 허만형 「부산지역 일본인 주거지내의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의 유입경로에 관한연구」
경동정보대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교수

II. 강화도 조약과 부산의 개항

1. 부산의 개항

일본의 메이지유신으로 德川막부가 붕괴되고 왕정을 복구한 신진세력은 봉건영주인 각번에 속한 옛 무사들을 외국정벌에 힘쓰게 함으로서 힘을 약화시키고 불평을 무마시켜 신정부의 권위를 세우고자 처음에는 국내문제를 수습하고 1874년에 대만 79년에는 류큐 강점과 같은 범주로 조선을 침략했다.

1875년 일본군함 운양호는 불법으로 조선영해인 강화도를 침략해 강화도의 포대를 도발하여 발포를 문제 삼아 그 죄를 묻는다는 구실아래 들어옴으로서 쇄국으로 일관했던 조선을 1876년 2월 27일 무력협박으로 강화도 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것은 아시아의 문호개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중국문호 개방(1842)과 미국의 일본 개방(1854)의 조약 체결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34년, 일본의 22년 뒤 조선을 개방시켜 일본은 평등권을 내세웠으나 각 조약들을 보면 거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강화도 조약은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전환되어진 분기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1875년 강화도사건과 이듬해의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부산(1877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에 각각 일본인 전관거류지⁵⁾가 설정되었다. 전관거류지 내에서는

5) 부산의 일본 전관거류지는 강화도 조약 제 4조와 동조약 부록 제 3조에 의해 1877년 1월 30일자로 동래부백 홍우장과 일본관리관 곤도사이에 부산에서 조인하여 한반도에서는 가장 먼저 설치되었는데, 11만평을 빌려주는 대가는 연간 고작 일화50 엔에 불과했다. 이를 부산구조계약이라 한다. 여기서 거류지란 concession, 또는 settlement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며, 중국과 조선에서는 조계라는 역어를 사용하였다(조계, 거류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 일지사, 1984, pp.54-89를 참조). 부산의 일본전관거류지에는 거류지회가 발전하여 일본거류민단이라는 행정자치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보호되는 등 마치 일본의 영토, 즉 「국가 속의 작은 외국」이었다. 이는 일본의 영토확장과 투자이익의 전진기지역할을 하였다. 거류지의 이러한 성격은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을 향후 대만은 물론 한국과 만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원형이 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토지와 가옥의 임차·조영권이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권익을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한반도 내에서 세력 확장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산의 개항은 조선의 개국(開國)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관거류지의 설정은 식민지 침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열강의 동양 팽창주의정책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식민지 획득은 자국의 부를 축적하는 방편이 되었다. 동북아에서 일본은 이미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영을 보아 왔었고 식민지로 적합한 인근 국가이며 서양문화에 폐쇄적인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한반도를 거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였다. 이것이 일본이 먼저 경제적 침략의 목표로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게 된 원인이다.

조약의 목적은 개항이며 개항은 자유통상을 가져오게 되며, 선진문물을 접해보지 못한 후진국은 경제적 침략 뒤에 반드시 정치적 침략을 받게 마련이다. 이 점은 서구 열강 중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반도공략이나 영국의 중국진출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강화도 조약도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조선영토 침략으로 급속히 변모되어 왔다.

여기서 조약의 1관을 보면

- 1) 부산을 포함 3개 항구를 개항시킨다.
- 2) 일본이 지정한 영사를 파견한다.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 범죄행위는 일본의 영사가 심사, 처리한다)
- 3) 관세는 당분간 무관세로 한다.
- 4) 연해, 도서, 암초, 해도를 자유로이 측량할 수 있다.
- 5) 조약체결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부산을 포함한 3개항을 무력행사로 개항했지만 부산에는 초량에 일본공관이 있었고 다년간 양국의 통상지로 처음은 3개 항구 개항, 가옥 토지 임차 즉, 개항전과 거주 통상권에 불과했다. 과거 왜관의 전통에 힘입어 조선의 부산은 쉽게 개항하고 말았다.

따라서 먼저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산항 개항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조약문 제4관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4 관

조선국 초량목(용두산 일대)에는 일본의 공관이 있고 오랫동안 양국민의 통상지로 되어있다. 앞으로는 종전의 관계와 세견선을 파견하는 등의 문제를 개혁하고 이번에 새로 의결되는 조관에 의거하여 무역사무를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외의 조선정부는 제 5관에 기재하는 2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 장소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가옥을 짓거나 또는 당장 조선인의 가옥을 임차함은 각기 수의에 맡긴다⁶⁾.

제4관의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항을 요구하는 문안 표현이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부산 초량목(지금의 용두산공원 일대)에 있는 왜관을 혁파하고 새로운 조계조약을 맺어 무역사무를 집행하고 일본인의 자유왕래는 물론 토지를 임차하여 가옥을 짓거나 또는 조선인의 가옥을 임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일본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조선을 침략할 수 있었던 빌미 중의 하나가 된 조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 6 관

앞으로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식량이 떨어져 위에 지정된 항구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항만에서든지 선박을 기박하여 풍랑을 피하고 소요품을 구입하여 선구를 수선하고 뿔나무 등을 획득할 수 있다. 그 공급비용은 선주가 부담함은 물론이

6) 강화도조약 원본은 한문본과 일문본 두 가지가 현재 일본 외무성 자료관에 보관되어 전해오고 있다. 본고에 쓰인 조약문은 한문본을 고찰하여 번역한 것이며, 한글 번역문은 국회 도서관에서 발행한 한국조약집을 인용하였다.

지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 관민들은 그 곤란을 살피며 진실로 인혈을 가하여 구원에 부족함이 없고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의 선박이 대양에서 파괴되어 승선원이 어느 지방에든 표착할 때에는 지방관청에 계출하여 해당 관헌은 각기 본국에 호송하거나 또는 그 근방에 있는 본국 관헌에게 인도한다.

제 7 관

조선국 연안의 암초는 이제까지 조사한 바 없어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명확히 하여 지도를 만들어 양국 선원들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6관에서는 그들의 함선이 조선해역에서 조난당할 경우 조난자가 구조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 있고, 제7관에서는 일본 함선이 자유로이 조선 연해를 측량하며 해도작성과 수로 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8 관

앞으로 일본국 정부는 때에 따라 조선국의 지정항에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헌을 둘 것이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전이 있을 때 해당관헌은 소재지 지방장관과 서로 상의하여 처리한다.

제8관에서는 일본은 조선의 개항장에서 그들의 이권 보호를 위해 일본인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는 일본이 자국 상인들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항된 항구에 자국 영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제 9 관

양국은 이제 통호(通好)를 하였으므로 양국민은 각자 자유로이 무역을

할 수 있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9관에서는 양국의 관리들이 자유무역을 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선으로부터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좀 더 나아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을 조선 정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10 관

일본 국민이 조선의 지정 각 항구에서 조선국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죄과를 범했을 경우 그 사건은 일본국 관헌이 심의할 것이다. 만약 조선국 국민이 일본 국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죄과를 범했을 경우 그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헌이 사변할 것이다. 단 쌍방이 모두 각기 국법에 의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비호함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재판할 것이다.

제10관의 내용은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치외법권에 대한 규정이다. 즉 일본인들이 부산 개항장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조선 관헌이 이들을 구속하지 못하며, 일본 국법에 의해 이들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실제로 개항장 내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외의 조약을 합하여 모두 12개 항목의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국제조약이긴 하지만 일본 측이 대륙침략 의도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회담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지만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계획대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만으로는 부족하여 일본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호 조규부록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호 조규 목록

- 1) 공관의 존재를 승인하고 수문을 철폐한다.
- 2) 영사를 항상 상주시킨다.
- 3) 일본인이 살 수 있는 거류지를 설치한다.
- 4) 일본인이 부산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
- 5) 조선인 노동자 고용권과 일본으로 데리고 갈 권리를 가진다.
- 6) 일본인은 화폐를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화폐 반출권을 가진다.
- 7) 조선인이 일본상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8) 묘지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등과 같이 거류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모든 기초를 만들었다.

그 외 조인희(趙寅熙)⁷⁾와 宮本小⁸⁾간의 의정서로 수출 수입관세를 없게 함으로써 조선경제 침략의 기초 완성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9월 太政大臣 포고 128호라는 것을 발하여 일본국민의 도항을 허가했다.

홍우창의 초량의 일정 지역은 이미 귀국에 빌려준 것이니 너희들에게 맡긴다고 한 발언이 나중에 명문화 되어 강력한 지방행정권으로 발전될 줄은 조선은 모르고 일본은 무력행사로 개항했지만 과거 왜관의 전통에 힘입어 그들의 의도대로 부산은 쉽게 개항되었다.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이 개항된 이후 이와 같이 전관거류지를 기점으로 각종 행정 · 치안 · 사법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개항으로 인한 일본인의 유입으로 사회질서, 그리고 자유통상무역으로 늘어난 각종 업무들을 관장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기존의 기관들을 증설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관서들의 증설로 인하여 일본인들의 조선에서의 활동,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부산 지역에서의

7)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조선 측의 대표자로 의정부당상이었다.

8)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일본 측의 대표자로 이사관 외교대승이었다.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고 합법화되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조선 전체를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종속기지로 만들려는 행정개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었다.

2. 원산의 개항

강화도 조약 5관은 부산 이외의 두 항의 지명을 지정하지 않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5개도(道) 중에서 2개 항구를 택하고 개항의 기간을 20개월 이내로 한다고 정하였지만 원산항이 개항 된 것은 3년 4개월이 지난 1879년이었다.

조약에서 정한 개항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 1) 국내여론 : 임진왜란 이후 외세침범을 극도로 경계하고 오랜 쇄국 속에 뜻밖이라 할 수 있는 병인양요(丙寅洋擾), 신미양요(辛未洋擾)의 양란을 거치면서 洋夷 사상이 가득했고 서민들의 배일사상, 부산의 거류지의 이동을 불가하려는 여론이 강했다.
- 2) 유생들의 척왜론(斥倭論)과 대원군 일파의 정치적 한쟁 때문에 국내 정세가 불안했다.
- 3) 일본의 준비가 부족했다. 우선 일본은 조선 연안의 지형과 수로에 어두워 개항장으로서 적합한 항구 선정을 지연시켰고 재정도 부족했다.⁹⁾
- 4) 영국과 러시아의 견제도 있었다. 통상의 필요성보다 군사적 목적을 중요시 했던 일본은 동해의 제해권과 러시아의 남하방지와 같은 군사적 국방상 중요한 위치였다. 게다가 풍부한 어업과 함흥평야의 농산물과 강원도 광산물을 모을 수 있는 위치였기에 영국과 러시아 역시 많은 관심을 보여 지리한 외교전쟁으로 원산항의 개항은 늦어졌다.

9) 채중문 『조선개국 외교사 연구』 전북대 출판사 p317-336

일본은 측량을 완료한 후 1879년 개항을 요구했다. 이는 통상(通商)보다 군사적 목적에서의 개항 요구였다. 일본은 원산이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인접국에 대한 국방문제와 한일간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요지의 훈령을 가지고 부산개항을 담당했던 홍우창을 다시 임용하여 상호협의를 추진했다.

부산은 처음 설정되는 만큼 여러 조약 체결과 그 조약에 의해 거류지가 설정되었지만 원산은 개항조약 자체가 부산에서 이루어진 조약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조선의 국내여론, 일본의 준비부족, 영국, 러시아의 관심 등으로 늦어진 것일 뿐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려 한 것이 부산 개항과 다르다.

그리고 원산항은 청일·러일전쟁 이후 확대되어 갔지만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 인구수는 얼마 되지 못했고 원산은 아직 벽지에 불과하여 다른 항보다 군사적 목적 이외에는 그 중요성이 떨어졌고 함경도 민심과도 잘 융화되지 못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3. 인천의 개항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해서 원산개항과 동시에 인천개항을 요구하고 협의하였으나 인천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 1) 인천이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을 개항하면 수도의 민심을 자극하고 쇄국을 고집하는 정파 간의 선동에 의한 민란을 두려워한 것과 인천은 서울의 젖줄과 같아 인천항의 개방이 수도의 안전과 왕실의 안위에 직결된다고 보았다.
- 2) 인천을 개항함으로써 쌀을 위시한 식료품, 생필품이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쌀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일어날 우려를 했고 수도의 민심이 나빠져 민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
- 3) 수도에 가까운 곳을 개항하면 상품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수도에

모두 모이지 않게 되어 쇠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10)

그리고 일본도 인천이 조수간만 차가 심하여(10m) 항구로써의 조건이 열악하고 조선 측이 제시한 5지방(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을 측량하였지만 항만조건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여서 결국 수도와 멀어진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인천을 개항장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¹¹⁾

일본공사가 조선과 개항 교섭(1879)을 하여 인천항에서는 미곡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개항하기로 하고 그 시기는 20개월 이내로 한다. 그러나 1882년 9월 임오군란으로 조금 연기 되었지만 조선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유와 협박의 되풀이로 끝내 성취하고 통상보다 침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이유가 강했다.

인천개항이 늦은 이유는

- 1) 강화도 조약에 의해 특정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사전조사 준비부족)에서였다.
- 2) 원산에 이어 인천까지 개항하면 개항 시설에 투자비가 부족했다.
- 3) 인천은 정세 변동이 강한 것이 부산과 다른 점이다. 인천개항당시는 이미 구미 열강들과 조선 사이에 무역과 통상할 기운이 시기적으로 결합된 관계로 부산과 다르고 또 원산, 인천은 부산을 표본으로 해서 개항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부산의 개항은 어느 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10) 채중문 『앞의 책』 전북대 출판사 p363

11) 『인천부사』 p105, 1931.

인천개항의 특징

한미조약에 의해 미국은 조선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고 영국이 조선으로부터 빌린 땅 이외에 10리 이내 토지를 외국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나중에 외국인이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거류지 밖으로 세력을 확대 시키는 여지를 주게 된다) 그런 연유로 부산 원산 토지 매수 임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 원산의 개항은 애초에 일본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인천 개항은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 서구나라들을 위한 개항이기도 했다.

여기서 개항 당시 3항(부산·원산·인천)의 일본인 인구수를 살펴보자.

표1) 개항당시 3대항의 일본인인구 규모비교

개항순서	년도	인구(명)	호구수
a) 부산	1876	82	-
b) 원산	1880	235	-
c) 인천	1883	348	75

표2) 5년후 3개 항의 일본인 인구규모 비교

개항순서	년도	인구(명)	호구수
a) 부산	1881	1925	426
b) 원산	1895	235	73
c) 인천	1888	1359	155

자료 : a)도시변화과정연구, b)원산발달사, c)인천부사

이 표를 통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개항의 중요성을 알고 부산 그리고 무리하게 원산과 인천을 개항시켜 일본인들을 상주시켰다. 여기서 인구 규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천과 부산은 인구가 소수에서 시

작하여 상당히 증가했으나, 원산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천과 부산의 경우를 보아도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보다도 더욱 많은 증가를 보인 부산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원산의 경우엔 단지 군사적 목적으로, 인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거점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개항시킨 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부산은 수도권과는 멀다고 해도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함께 무역통상의 개념이 강해 예부터 왜관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자연적으로 세력 확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행정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며 결국 군사적 전초기지로서의 활용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부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Ⅲ. 부산지역 일본인의 유입 및 인구 형태

1. 일본인의 부산유입

1) 일본인의 인구증가와 구성

부산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이주·정착한 것은 1876년 9월 14일 태정대신 포고(太政大臣布告) 128호가 발포된 후부터이다. 정식으로 주거지가 개설 될 때의 일본인총수는 약80여명이었다.¹²⁾ 부산의 개항이후 일본은 수호조규 제8관에 의거하여 거주민의 보호, 관리 및 통상사무의 관장을 위하여 관리관을 임명하여 주재시켰다.

영사관이 설치된 직후, 영사가 시달한 「부산일본제국 전관주거지소대도규칙(釜山日本帝国 專管住居地支所大都規則)」에 주거지내의 토지는 일본인에 한해서 차용, 양여 또는 상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인들은 이 일본인주거지를 거점으로 해서 세력을 넓혀가게 되었다. 그 후 인구도 급격히 증가했다. 다음의 표는 개항초기 일본인수의 변동표이다.

개항이후 부산 재류(在留) 일본인의 증가 추세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부산일본인인구증가표

年度	戶數	人口	年度	戶數	人口	年度	戶數	人口	年度	戶數	人口
1876	.	82	1887	.	2,006	1896	986	5,423	1905	2,363	13,364
1879	.	700	1888	.	2,131	1897	1,026	6,065	1906	2,981	15,989
1880	402	2,066	1889	628	3,033	1898	1,055	6,242	1907	3,423	18,481
1881	426	1,925	1890	728	4,344	1899	1,100	5,326	1908	4,213	21,292
1882	306	1,519	1891	914	5,254	1900	1,082	6,067	1909	4,284	21,697
1883	432	1,780	1892	938	5,110	1901	1,250	7,029	1910	4,508	21,928
1884	430	1,750	1893	993	4,750	1902	1,352	9,691			
1885	463	1,896	1894	906	4,028	1903	1,582	11,711			
1886	448	1,957	1895	952	4,953	1904	1,891	11,996			

12) 손정목 『한국개항장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p.17-22, 1984.

출전 : 井上清磨 『釜山を担ぐ者』 釜山大朝鮮社 p.17-22, 1931.

손정목 『조선개항기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p.106에서 재인용, 1982.

부산의 일본인 전관거류지는 항구를 중심으로 용두산과 용미산(구부산 시청자리)을 포함한 약 11만평 규모의 광대한 면적의 것이었다. 여기에 영사관·경찰서·우체국·상업회의소·제 1국립은행지점 등 주요기관이 설치되었으며, 넓고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들이 부산으로 들어와 본국과 다른 없는 일본인 사회를 형성해나갔다.¹³⁾ 그 결과 부산에서는 합병 전에 이미 주요 시가지의 원형이 형성되었으며, 거의 일본의 독점적인 세력권으로서 도시건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인구도 일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⁴⁾

인구추세를 살펴보면 1876년 말에 82명밖에 되지 않았던 일본인이 1880년에는 2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1881년, 1882년에는 다소 감소하고 1883년부터 조영수호조약 제 4관 4항 「주거지경계로부터 10리의 범위 내에는 외국인의 거주 및 토지, 주택의 소유가 인정 된다」라는 규정이 일본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일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883년에 1천7백8십 명이 1893년에는 4천7백 명 이상이 증가했다.

부산항에 이처럼 일본인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무역의 비약적인 증가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내에서 고조되고 있었던 식민지 열기를 들 수 있다. 그 예로 1893년 결성된 식민협회는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가 과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일본인종의 번식을 도모하며 셋째, 조선의 해권을 침탈하고 넷째, 조선의 상권을 신장하고 다섯째, 대외정신을 발양하여 그 기운을 넓히는 한편 신지식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인심을 변화

13) 당시 동아시아에 도향한 중하류의 일본인들이 국가적인 대외진출을 근지에서 뒷받침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이 정치가나 관료들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도향한 수많은 무명의 일본인들도 침략의 저변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 후 무명의 일본 식민지나 중국 동북에서 볼 수 있는 일본제국주의 진출형태의 원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대일본의 식민지』 岩波書店, 1993.

14) 1898년 말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하와이 다음으로 많은 약 2만명의 일본인들이 재류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通商集積』 151호 p.48-51, 1899.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¹⁵⁾

특히 일본 내부에서의 경제적인 침체¹⁶⁾는 바로 정기항로를 이용한 도항으로 이어졌으며¹⁷⁾ 부산항에서의 활발한 무역은 또다시 무역도매상과 중간매매상의 증가를 가져다주었으며,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직업의 일본인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호수의 증가, 즉 가옥 건축 활성화로 연결된 것이다.

이주일본인들은 극빈농어민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겨우 점포를 마련하여 상인화 하고 나아가서는 고리대금업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자수성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인화의 과정에서 조선인이 희생되어 갔음은 짐작할 만한 일이다.

이후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해서 1904년에는 1만1천9백9십6명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최초로 설정된 일본인주거지로서는 협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주거지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10년 병합 이후부터 1945년 종전까지 부산의 총인구 및 일본인 호구, 증가 추세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식민협회보고』 찬간호 p.104-107, 1893.

16) 서양열강에 개항한 이래 계속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881년 마쓰카타(松方政義)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취하였다.

17) 『釜山府史原稿』 6 민족문화 p.399. 1966.:당시 한일간의 정기여객은 부산-시모노세키(월3-4편, 13시간 소요), 부산-나가사키(월 5-6편, 16시간소요) 등 부산항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정기 여객선인 격일에 한 번 정도로 왕래하고 있었다.

<표 4> 부산부 총인구 및 일본인 호구수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호, %)

년도	총인구 (A)	일본인 호구수				C/A	C/B	E/D
		호수(B)	인구수(C)	남(D)	여(E)			
1910	71,353	6,171	23,900	12,539	11,361	33/5	3.87	90.60
1911	99,833	6,528	24,794	12,866	11,908	24.8	3.79	92.41
1912	103,737	6,826	26,586	13,570	13,016	25.6	3.86	95.92
1913	111,356	6,956	27,610	14,202	13,408	224.8	3.97	94.41
1914	55,094	7,115	28,254	14,479	13,775	51.3	3.97	95.14
1915	60,894	7,369	29,890	15,355	14,535	49.2	4.06	94.64
1916	61,047	6,869	28,012	14,363	13,649	45.9	4.08	94.03
1917	61,506	7,177	27,726	14,126	13,600	45.1	3.86	96.28
1918	62,567	6,993	27,895	14,151	13,744	43.9	3.99	97.12
1919	74,138	7,575	30,499	15,480	15,019	41.1	4.03	97.02
1920	73,885	7,689	33,085	17,023	16,062	44.8	4.30	94.35
1921	76,126	7,897	33,979	17,496	16,483	44.7	4.30	94.21
1922	78,161	8,111	34,915	17,993	16,922	44.7	4.30	94.05
1923	79,552	8,281	35,360	18,226	17,139	44.5	4.27	94.06
1924	82,393	8,902	35,926	18,477	17,449	43.6	4.004	94.44
1925	103,522	9,364	39,756	20,105	19,651	38.4	4.25	97.74
1926	106,323	9,584	40,803	20,674	20,129	38.4	4.26	97.36
1927	113,092	9,533	41,144	20,892	20,252	36.4	4.32	96.94
1928	116,207	9,822	42,246	21,460	20,786	36.4	4.30	96.86
1929	119,655	9,931	42,642	21,670	20,972	35.6	4.29	96.80
1930	130,397	10,347	44,273	22,269	22,044	34.0	4.28	98.81
1931	139,538	10,836	45,502	22,815	22,687	32.6	4.20	99.44
1932	148,156	11,531	47,836	24,171	23,665	32.3	4.15	97.91
1933	156,429	12,358	51,031	26,152	24,879	32.6	4.13	95.13
1934	163,814	12,699	53,332	27,617	25,721	32.6	4.20	93.13
1935	202,068	13,142	56,512	29,548	26,964	31.4	4.30	91.25
1936	206,386	14,026	59,014	29,571	29,443	28.6	4.21	99.57
1937	213,142	14,048	59,231	29,665	29,566	27.8	4.22	99.67
1938	213,744	13,352	55,767	27,174	28,593	26.1	4.18	105.22
1939	222,690	12,060	51,302	25,046	26,756	23.3	4.30	106.83
1940	240,033	12,464	54,266	26,591	27,675	22.6	4.35	104.08
1941	281,160	12,787	57,688	27,910	29,778	20.5	4.51	106.69
1942	281,160	14,064	61,436	29,558	31,878	18.4	4.37	107.85
1943	334,318							
1944	325,312							
1944	328,294							

출천 : 『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에 의거함

비고 : 1. 1910-1913년의 일본인 호구수는 '부산일본인거류민단'소속의 인호수임.
 2. 『총독부통계연보』의 1924-1932년도 조사에서는 호수를 거주호수와 세대호수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본표에 제시된 것은 세대호수임.

<표 5> 부산부 일본인수의 연도별 증감추세 (단위 : 명, %)

연도	증감수	증감율	연도	증감수	증감율	연도	증감수	증감율
1911	894	3.74	1922	936	2.75	1933	3,195	6.68
1912	1,792	7.23	1923	445	1.27	1934	2,307	4.52
1913	1,204	3.85	1924	556	1.60	1935	3,174	5.95
1914	644	2.33	1925	3,830	10.66	1936	2,502	4.43
1915	1,636	5.79	1926	1,047	2.63	1937	217	0.39
1916	-1,878	-6.28	1927	341	0.84	1938	-3,464	-5.85
1917	-286	-1.02	1928	1,102	2.68	1939	-3,965	-7.11
1918	169	0.61	1929	396	0.94	1940	2,462	-4.75
1919	2,604	9.34	1930	1,631	3.82	1941	3,422	6.31
1920	2,586	8.45	1931	1,229	2.78	1942	3,748	6.45
1921	894	2.70	1932	2,334	5.12	1944	-418	-0.68

비고 : 증감율은 당해연도 인구수-전년도 인구수/전년도 인구수를 나타냄. 단 1944년의 증감수와 증감율은 1942년을 기준으로 함.

전체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는 1910년 2만 여 명이던 것이 이후 계속 증가하여 일제말기인 1942년에는 6만 여 명에 이르는 약 300%의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이 전시기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전히 부산이 일본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음을 반증한다. 1900년 당시만 해도 부산항내의 노동자 임금은 일본에서의 임금을 몇 배나 웃도는 것이었다. 더구나 생활비는 일본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일본국내에서 부국강병정책이라는 적극 정책 하에 고율지조에 의해 빈곤에 허덕이던 일본인들로서는 무엇보다 부산이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도항하는 일본인들은 급증¹⁸⁾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제시기 전 기간동안 부산의 일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 전체 인구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부제 실시 직후인 1914년

18) 『부산요람』 제4권 제2호 p.18-19, 1929.

부산부내 일본인 구성비는 51.3%로 일본인 인구가 조선인 인구를 능가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36년 부산부의 행정구역의 확대 개편이 있기 직전에는 부산부 일본인 인구는 부산부 전체 인구의 약 30%대로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전체의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조선인 농촌 인구의 부산으로의 유입이었으며, 일본인의 인구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부의 일본인 인구 구성비는 일제시기 동안 전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별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일본인 사회의 비중이 결코 낮았던 것은 아니다(표 6. 참조).

<표 6> 전국 주요 도시 일본인 구성비 비교(1920과1930) 단위 : %

	경성	부산	평양	대구	인천
1920년	26.22	44.80	22.72	26.71	30.92
1930년	27.50	33.92	13.26	29.32	17.65

출처 : 『조선총독부통계연부』 (1920,1930년도)를 기초로 작성

인구 증가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추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부산의 일본인 증가율은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미미하다가 1930년대에 중후반까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일본인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41년과 1942년에는 일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연도별 또는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중 특징적으로 절대 인구수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년도는 1925년이다. 이는 1925년 경남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 인력의 증대와 함께 부산이 지역중심도시의 중심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통치하에서 행정인력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전 시기를 걸쳐 1930년대 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인구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9년 이후 일본 내의 경제 불황 때문에 일본 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의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일본으로부터의 부산이주가 촉진되어 졌다.

셋째, 1937년 이후 일본인 인구 증감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는 중일 전쟁이후 대륙 침략 전쟁에 남성인구가 징집되어졌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표 4>에서 남성인구에 대한 여성인구의 비율이 1938년부터 크게 증가한 사실로서 증명할 수 있다.

<표 4>의 자료를 토대로 일본인 호구수와 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 부산 거주 일본인호의 호구수는 대체로 1호당 4.0내외로 연평균 호당 인구수는 3.95명 수준이다. 이는 1920년대 들어 다소 증가하여 1920년대에는 연평균 호당 인구수는 4.26명, 1930년대는 연평균 호당 4.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1920년대에서 30년대 부산 일본인의 가구당 인원은 4-5명이 평균적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25년 기준으로 당시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평균적 수치, 호당 인구수 3.75명보다 높은 편이나 동시기의 조선인 가구의 호당 인구수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¹⁹⁾

이는 1920년 들어 부산지역 일본인들의 정주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다른 지역 일본인들에 비해 정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 “1925년 말 현대 조선거주 일본인 수 112,254세대, 남 221,163명, 여 203,577명, 계 424,740명으로 1세대 평균 인구는 3.75명이다. 1호당 평균 인구가 이렇게 적은 것은 아직 조선에 정주할 각오가 적어 일본에 가족을 남겨놓고 오는 거주자(假住者)나 족신의 출가인이 많은 증좌이다.” 『조선의 인구현상』 p.107 조선총독부, 1927.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른 1920년의 일본인 호구수의 성비를 보면 7,689호의 33,085명의 인구 가운데 남자가 17,023명이고 여성이 16,062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94.35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남녀간 성비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수준, 경제상태 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²⁰⁾ 부산과 같은 식민도시에서는 본국으로부터의 임시출가자, 특히 남성 독신인구의 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일제시기 부산의 일본인의 성비상의 특징을 보면 조선 내 다른 거주지역 일본인의 경우보다는 여성의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적어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인의 성비와 비교하여 여성의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독신남성의 출가자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¹⁾

시기적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는 성비의 증감 폭이 다소 심한 반면, 1920년대 후반부터는 전반적으로 남성인구에 비해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의 정주민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936년 이후에는 여성의 성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30년 이후에는 여성인구의 상대적 증가는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 남성의 병력징발에 그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주성의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912년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20) “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경제상태가 유치한 나라에서는 남자수가 여자수보다 많지만 문화가 진보하고 경제상태가 양호하게 됨에 따라 차제에 여자수는 증가하여 남녀수가 균형해지고 더 나아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국부의 중진을 보게 되면 여자수가 남자수보다 초과하기에 이르는 것은 인구론자의 통설이다.” 『조선의 인구현상』 P.142

21) 다소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 1000명에 대한 여자의 평균수는 954.5명으로 이것을 일선외인별로 남자수에 대한 여자수의 비율로 조사하면 조선인은 평균 954.5보다 약간 높고(958.7), 일본인은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920.5) 서양인은 남자수보다 여자수가 다소 많으며(1,038.7), 중국인은 거의가 남자이다(139.9). 『조선의 인구현상』 p.143-144 조선총독부, 1927.

<표 7> 부산 거주 일본인의 출신지역

山口 4,766	大分 1,441	岡山 910명	島根 655명
長崎 3,299	大阪 993명	能木 844명	
福岡 2,031	佐賀 963명	兵庫 816명	
広島 1,918	愛媛 931명	香川 691명	

출처 : 박원표 『개항 90년』 태화출판사, 1966.

또한 일제시기 부산부 일본인 인구의 본적지 출신별 구성을 살펴보면 1912년 2월 말 현재 부산 민단구내 일본인의 부현별 인구에서 총일본인 인구는 25,641명이며, 그 가운데 부현별 우선순위를 보면, 山口県이 4,7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長崎県(3,229), 福岡県(2,031), 広島県(1,918), 大分県(1,441)의 순이다.²²⁾

1920년 말에는 부산거주 일본인 총인구는 33,085명이며, 이들의 출신지역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中国지방이 1위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九州지방, 四国지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현별 순위는 1위가 山口県, 2위가 長崎県, 3위가 福岡県, 4위가 広島県, 5위가 岡山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35년에는 지방별 순위는 九州지방이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中国지방, 近畿지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20년대 들어 九州지방의 일본인들의 이주와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近畿지방의 일본인들도 1920년대의 3,021명에 비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부현별로는 山口県이 1위를 차지했으며 長崎県, 福岡県, 広島県, 大分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일본인의 일본본국에서 부산으로의 이주는 지리적 이동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내 지역경제의 조건, 정치적 조건 등이 부차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22) 『부산요람』 p.10-12

2) 일본인의 출신과 직업의 형태

1910년대 부산지역 일본인들의 주요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1912년 부산지역 일본인 주요직업

단위 : 호, %

대분류	소분류(명)	합계(%)
공업	정미업(10), 술양조업(22), 장유양조업(16), 인쇄업(4), 통조림제조업(8), 양복봉제업(8), 사진업(8)	76(3.69)
상업	무역상(39), 백미소매상(115), 만물.잡화상(274), 어패류상(22), 철물상(25), 도자기(10), 술판매상(59), 장유판매상(12), 목재상(13), 약종상(23), 전당포(47), 고물상(129), 시계상(8), 연초상(34), 문방구상(9), 종이(9), 서적상(3), 석탄상(5), 램프상(6), 과자상(27), 향구상(20), 청과물상(32), 요리점(39), 가구(20), 농기구(2), 찻집(2), 여관(27), 하숙(77), 목욕탕(31), 이발소(72), 요리실(38), 음식점(115) 등	1,378 (66.83)
교통업	운송업(20)	20(0.97)
공무.자유업	관.공리(467), 의사(38), 변호사.변호인(9), 신문기자.통신원(13), 신관(8), 승려.선교사(13), 산파(25), 대서업(15)	588 (28.52)
합계	2,062(100)	

자료 : 『부산요람』 부산상공회의소 p.12-1223, 1912.

<표 8>의 직업별 인구 조사는 당시 일본인 전체 호수의 약 30%만을 반영한 것이다.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상업이 66.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직종으로 만물 잡화상이 274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물상(129호),

23) ①본 표는 민단정세부, 경찰서 조사 및 동업조합규약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②본표의 일본인 직업은 그 주요한 것만 게재하고 기타는 제외함.

백미소매상과 음식점(115호), 하숙옥(77호)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공업에 종사하는 가로는 전체의 3.69%인 76호로 병합초기 부산의 공업발전수준이 매우 미약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무·자유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공리가 467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시 일본인이 행정인력으로서 많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직업적 구분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일본인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하여 1930년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인 사회가 조선인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층이 두터운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반면 하층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육체노동자들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인 사회의 경우 자본가계층과 중간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조선인 사회의 계층구성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사회와 일본인사회의 공간적으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확연히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산이라는 식민도시가 지닌 이중적 사회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1930년대 부산인구의 사회계층별 분류

계층별	일본인(%)	조선인(%)	계(%)
농어민층	1,374(7.2)	4,092(11.8)	5,468(10.2)
사용자층	1,237(6.5)	464(1.3)	1,701(3.2)
관리자 및 기술자	1,035(5.4)	414(1.2)	1,449(2.7)
자영업자	3,445(18.20)	5,846(16.8)	9,291(17.3)
관공리 및 전문직	3,227(17.0)	945(2.7)	4,172(7.8)
육체노동자	8,654(45.6)	22,993(66.2)	31,647(58.9)
기타	27,881	60,941	88,882
무직,미신고자	856	1,826	2,682
합계	47,709	97,521	145,230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p.200-216 慶尙南道編, 1936.

일본인사회 내부의 계층분화와 일본인 실업층이 증가함에 따라 1920년대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본토의 예대로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었다.²⁴⁾ 직업소개소는 부산부 전체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특히 일본인들의 실업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즉, 도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의 발생은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1920년대에 이르러 실업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는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직업구조가 반드시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산은 대륙침략의 거점인 식민도시로 출발하였지만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상공업적인 기반과 함께 경상남도의 지방 거점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은 공간적, 사회 계층적으로 일본인사회와 조선인 사회의 격리된 이중적인 사회구조를 가졌다.

2. 일본인의 주거지 획득과정

부산은 개항이후 일본조계(日本租界)와 청조계(淸租界), 그리고 조차지(租借地)로서는 일본조차지(日本租界地)와 러시아 조차지(租界地)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당시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 부득이 우리의 영토를 세를 받고 빌려준 형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계(租界).조차지(租借)라는 형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무단으로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다.

부산에는 강화도조약 제4조와 동조약 부록 제3조에 의해 맨 처음 일본의 단독조계(租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1877년 1월 30일자로 동래부사,

24) 홍순권 「일제시기 직업소개소의 운영과 노동력 동원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홍우창(洪祐昌)과 일본관리관(日本官理官) 사이에 부산에서 조인을 하여 설치되었다. 이를부산 일본 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이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인 전관거류지의 형성과 함께 「일본식 근대화」의 물결이 대대적으로 들어오면서 부산포는 전통적인 시가지인 동래와는 달리 근대적으로 건설된 산업·물류지역으로 자리매김 되어갔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까지 서울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여타 열강에 비해 일본이 독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진전화와 함께 1905년 9월 개설된 관부연락선으로 일본과 직결되면서 부산은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의 현관이 된 것이다.

또한 같은 해 경부철도의 완성으로 교통량과 물류망이 확대되면서 부산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은 명실공히 일본의 식민지 도시의 원형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인주거지는 매년 이주하는 일본인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지가 협소하게 되었다. 부산 전관거류지 약 11만평에서 일본영사관은 그 반을 관용지 및 공용지, 공공용지(도로와 공원)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를 일반 민간인들에게 영구대여 했으므로 거류지는 얼마 안 되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고 말았다.

한편, 부산의 지세는 산악이 바다에 임박해 있어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용지의 확장요구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거류지내 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거류민회는 새로운 지가를 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²⁵⁾

그러나 부동산의 투자허용한계가 조계조정에서 10리, 50리, 100리로 확장되면서 토지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주로 영도일대와

25) 『釜山府史原稿』 6 p.370-371 민족문화, 1996.

전관거류지 서쪽에 해당하는 대청동, 보수동, 대신동, 부민동 일대, 그리고 동쪽으로는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 범일동 일대에 대하여 폭발적으로 토지 소유를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들의 토지소유는 1880년 7월 3일에 일본영사와 동래부사가 상의하여 북빈 일대를 새로이 거류지에 편입하면서 점차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1882년에는 북병산의 일본인 묘지 약 1만 5000평을 일본 거류지 부속지로 삼았으며, 1885년 12월 25일에는 영도에 해군용 석탄저장을 명목으로 4,900평의 조차지를 획득하고 1892년에는 북병산 일본인 묘지 일대를 병자수호조규에 의거한 묘지조항을 들어 일본주거지의 부속지로 흡수하는 등²⁶⁾ 일본은 부산지역의 실질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는데 전력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섬과 산을 차입하였고, 그 후 주거지 전면의 해안 매축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해안매축은 북빈 일대의 매축공사로써 1898년 1월에 부산매축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북빈 일대 20만3천4백㎡의 매축허가를 신청하여 1900년 말에 기공권을 받았다.²⁷⁾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매축면적을 40,329평으로 축소하여 공사를 제1기와 2기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이 공사를 위해서 부산매축주식회사를 창립하고, 1주당 500원으로 총주수 500주, 계25만원으로 1902년 7월에 회사등기를 완료하고 동시에 지점을 설치했다. 그 후 10만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 35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02년 7월 19일에는 제1매축공사를 착공하여 1905년 12월에 낙성하였다.²⁸⁾ 이를 계기로 거류지내 일본인의 토지매수나 임차가 매우 활발해졌고

26) 부산일본거류지묘지관리규약 제3조에서

27) 김용욱 「부산의 축항지」 『항도부산』, 1963.

28) 「한국이대항실세」 p.121 일한정문사, 1905.

1905년 일본인 소유 토지면적은 조계지 11만평²⁹⁾, 공평지 100만평, 민유지 435만평, 매축지 3만 1714평등으로 모두 549만 1714평에 이르렀다.³⁰⁾

이러한 사실을 1905년경 신문기자로 부산에 주재하고 있었던 相沢二助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산전관거류지 밖의 10리 내의 토지는 점차 본방인의 소유로 귀하였으며, 이제 근처의 요지는 거의 모두 독점이 끝났고 산지 또는 원거리의 땅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매가 또한 매우 고가가 되어 이 부근의 땅은 평당 8,9원에서 30원까지 달하고 산지라 할지라도 수원을 부르고, 1원 이하의 것은 없다.³¹⁾

이러한 매축지의 분배는 도로가 약7,550평, 부산역부지 4,840평, 산양철도합소 303.5평(좌등정 5번지), 부산우편국부지 628평(대창정 5번지), 우선회사 600평(고도정 2번지의 300평, 좌등정 1번지의 300평), 상선회사 600평(고도정 1번지중300평과 좌등정 4번지중 300평), 세관용지 628평이었다. 이 매축지의 새로운 동명 및 평수는 다음과 같다.

29) 1901년 4월 일본영사는 일본 조계지내의 토지를 관유지(18,743평), 공유지(2427평), 공원지(20480평), 도로용지(13000평), 민유지(55000평)으로 구분하였다. 민유지는 4등급으로 구분되어 1등지(10,126평), 2등지(15,728평), 3등지(7,449평), 4등지(22,387평)등이었다.

30) 최원규 「동래별장 주인 하자마와 진영농민운동」 『시민을 위한 부산역사』 늘함께 1999년 : 당시 부산의 3대 성공자중의 하나인 하자마(迫間房太郎)는 땅부자로 1892년 영도 전체를 조선정부로부터 5만엔에 매수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이들 일본인들은 1905년 이전 조계지 밖 10리 이내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 이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한 날에 갚지못하면 절차없이 가옥과 전답을 빼앗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해나갔다.

31) 김용욱 「부산의 축항지」 『港都釜山』 제 2호, 1963.

<표 10> 부산의 새로운 매축지 분배

구분	동명	평수
1	坐灯町	1번지에서 22번지까지 총면적 3,361평이고, 최대지는 300평, 최소지는 66평
2	埋立伸町	1번지부터 48번지까지 총면적 4,498평이었지만 대부분 조계내의 일본인에게 양여
3	大倉町	1번지에서 22번지까지 총면적 3,314평이고, 최대지는 1080평, 최소지는 54평
4	安本町	1번지에서 49번지까지 총면적 3,024평이고, 최대지는 120평, 최소지는 43평
5	中町	1번지에서 14번지까지 총면적 1,435평이고, 최대지 120평 최소지 48평
6	高度町	1번지에서 14번지까지, 총면적 2,006평으로 최대지 300평, 최소지 39평
7	京釜町	(경부철도기점 본역택지) 총면적 4,843평

출처: 허만형 「부산지역 일본인 주거지내의 일식주택과 양품건축의 유입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3호, 2001.

이 당시 부산에서 일본 주거지에서는 1904년 부산 상품진열관을 설계한 일본인 건축가들이 활약하였다³²⁾. 부산의 일본 주거지에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건축가와 토목 및 건축의 청부업자가 많이 활동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주거지내의 시가지 정비와 상가를 형성한 일식 목조주택의 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다.

병자수호조규 제4관동 조규부록 제3관에 의하여 부산일본조계가 조인되어 약 11만평이라는 토지가 일본인 소유나 다름없이 된 1877년 1월 30일 이래, 그 변두리의 막대한 토지마저 손에 넣은 일본인들은 그 막대한 토지(1905년 현재 5,491,714평) 위에 속속 그들의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택을 소유한 일본인은 1910년 6월의 통감부판 「최근한국사정요람 제223」에서 살펴보면 1909년 6월말 조사결과 부산의 일본인 건물 소유자 수는 1,258인으로 그 총평수가 103,789평으로 되어 있다.

32)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태화출판사, 1963. p.280.

물론 그 중에는 상가건물 등 2중 소유와 공공건물도 있을 것으로 믿어 지나 당시 건물 소유자는 전체 호구수의 약29%가 되는 것으로 전체 일본인의 약 3분의 2 이상이 자기소유의 주택에 거주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산거주 일본인들의 빈부 차가 있다는 결과도 되고 이주민증가율에 비하여 주택건립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건립된 일본인 주택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많이 생겼고 1900년경에는 일본인 소도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동(町)마저 일본식으로 표기하였다(항도부산 제2호 참조).

이 양상을 일본인의 기술대로 표현한다면 「...시가지의 중앙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어 용두산이라고 부르며 이 곳을 부산의 공원이라, 시가지는 이 용두산을 중심으로 주위가 넓게 전개 되어 있고 시가지는 남북으로 크고 작은 20여개 동으로 되어 있고 특히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창선동 등은 상거래가 활발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았고 주택의 구조는 하나같이 일본풍으로 만든 기와집 형태의 전포가 즐비하여 완전히 일본의 도시와 똑 같더라...」³³⁾

이렇게 일본 주거지가 그 당시로 보아서는 비교적 정연하고 기와집으로만 건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개항초기인 1880년 7월 19일에 일본영사의 이름으로 거류민단을 통하여 관청에 통지(通志)된 주택건축 기규칙에 의한 것이었다. 그 기규칙이라 함은 전문 7조로 된 일종의 건축법규인데 그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하는 자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계획된 도로에 따라 그 방향을 바르게 할 것.
- ② 주택이 도로에 접하는 자는 물론 도로의 계획에 준해서 할지라도 만일 도로에 접하지 않던가 또는 주택 내 여유의 땅이 있는 자는 담장을 하고 도로에 향하여 그 문을 낼 것.

33) 『부산요람』 1912년 발간 제3면에서 번역

- ③ 주택은 기와집으로 한함. 송판 등 연소하는 물질을 사용해 지붕을 잇지 못하게 할 것.
- ④ 화장실의 구조는 가장 청결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화장실은 가급적 튼튼한 것을 사용하고 분뇨가 쌓이지 않도록 할 것.
- ⑤ 택지내의 하수구 등은 화장실 전체의 튼튼한 것을 쓰고 하수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⑥ 옛날에 지어진 집일 경우는 그것들을 이 규칙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제2조, 제4조, 제5조의 규칙에 따르고 12개월 이내에 제3조 규칙에 따를 것.
- ⑦ 규칙에 위배하는 자는 택지 반납을 요구할 것임.³⁴⁾

이것으로 미루어 200여 호의 주택밖에 없었던(1889년) 개항초기부터 주거민의 증가를 예상하여 도로망을 계획하고 주택의 구조를 규정하여 일식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인 주거지는 일본을 방불케 하는 시가가 형성되는 가운데 관리관청을 필두로 일본인들의 경찰서, 은행, 병원, 상업회의소, 전화국 등 공공건물이 차례로 건축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이 부산 땅에 그들의 기술로 소위 양풍건축을 유입한 경로는 주로 관아 건물과 공공 건축물들이고 그것은 통감부설치이후 민단의 법적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확대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할 것이다.³⁵⁾ 또한, 대사업은 통감부의 직접 관할하여 관리, 감독하였으며 당시 조선 도지부소관공사(都支部所管公事)라는 것은 통감부를 통한 일본인의 발기이며 기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아건물과 공공건물 외에 민간의 시설 특히 상업건물이 별도로 적지 않게 건립되었는데 개인상점은 일식 주택임에 틀림없고 양풍건축을 찾는다면 상업회의소를 비롯하여 회사 조직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4) 『부산부사원고』 제6호 p.138에서 번역

35)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256-257

상업회의소부설 상품진열관은 부산의 건축사상 괄목할 처지에 있는 것이지만 기타 은행과 회사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905년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러일 전쟁 후 일반기업이 갑자기 많이 건립됨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일본인 거주지의 형성에 따른 거주지별 일본 사람의 인구와 부산사람의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거주지별 인구 통계(일본사람/부산사람)

부평동(6,014/768명)	광복동(1,681/66명)	토성동(1,938/340명)
보수동(3,555/2,732명)	대청동(2,191/231명)	신창동(2,320/131명)
대창동(2,781/910명)	동광동(1,959/585명)	창선동(1,120/152명)
대신동(5,545/18,398명)	영주동(965/13,583명)	초량동(5,015/14,893명)
수정동(2,995/9,797명)		

출처 : 부산안내, 1936.³⁶⁾

<표 11>은 살펴보면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에는 대부분 일본인이 점하고 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많은 지역은 대신동,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인데, 대신동의 경우에는 일본인이 약 6,000명인데 비하여 부산사람은 약 20,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사나 새롭게 조성된 고급 주택지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산자락으로부터 산 속의 빈민가나 초가집으로 조성된 부분은 부산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진이나 초량지역 등은 조선인 고유 거주지와 청국인 거류지가 있어 쉽게 일본인 부지로 확장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철도부설을 명목으로 약 20만평의 철도용지를 강제 취득·조성하면서 이권을 획득했고 조선인들은 산허리 고지대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이다.³⁷⁾

36) 부산안내(1936)의 일본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전환

37) 1900년부터 일본은 37만평의 부지를 한국정부에 교섭하여 토지 금매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반대하여 1902년 7월 초량의 부지를 7만평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인구 통계자료로 유추하여 보면, 일본인과 부산 사람들 간의 생활 영역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생활사를 인류학적 방법론으로 연구한 최인택의 논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³⁸⁾.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지에 도착해 보니 당시 조선에서는 노동자, 농업은 조선이 하였고 일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내지에서는 일본인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집에서 중학교까지는 兎山(토끼산, 지금의 민주공원 근처)를 넘어 걸어 다녔는데, 보잘것없는 초가집에 조선인들이 닭, 돼지 등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아마도 일본인들에 의해 중심부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겠다. 낮은 임금으로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현지에 살아 본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것 같다.」

이와 같이 많은 일본인 정보제공자를 통한 삶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부산지역은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일본인 거주지는 도심의 중심지, 즉 평지 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곳이었다. 반면에 조선인 거주지는 산자락이나 도심의 주변부였으며, 초가집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8) 최인택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생활사」 『부산경남사학회』 52, 2003.

3. 일본인의 토지소유과정

朝鮮朝末期 일본·일본인의 토지소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94년에서 1895년경부터이다. 특히 청일전쟁 당시를 전후하여 일본의 토지소유 양상은 격심하여 졌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淸의 세력이 쇠퇴하자 그 다음으로 러시아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러·일이 대립하는 신국면을 맞게 되는데, 1896년 5월 5일 러시아 군함이 부산항에 처음으로 정박하여 예포를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때 공교롭게도 부산항에는 일본군함이 같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부산의 조차지에 대한 양국의 암투가 시작되게 된다. 부산에서 본 러·일 관계, 다시 말해 러시아의 조계, 조차지 획득에 대한 일본의 방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일본정부는 부산의 북병산을 租界부속지로 빌리려고 교섭하고 있던 차에 러시아 정부는 북병산의 매수를 한국정부로부터 양도받아 실지 측량권(實地測量權)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본정부와 일본영사는 즉시 ‘日本墓地’라고 새긴 표목을 경계에 세우고, 새경 일본공사에게 급전하여 급관토록 연락하였다. 당시 러시아정부가 매입하려고 한 북병산은 1884년 5월 17일에 체결한 「朝露條約」에 근거를 두었으나 결국 일본정부의 북병산에 대한 선점권(先占權)을 승인하게 되어 러시아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 그들은 강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 국내의 옥토(沃土)를 획득하였고, 특히 1904년에서 1905년경 즉 러일전쟁(露日戰爭)부터는 더욱 심하였다. 통감부 제3차 통계연보에 의하면, 1903년 12월말 현재 재한 일본인의 소위 농사회사(農事会社)의 수는 조선농사주식회사(朝鮮農事株式會社)를 비롯하여 이미 21개사였고, 당시 150만평이상을 경영하는 일본인 지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를 제외하고

도 15농장이나 되었다³⁹⁾.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1909년 현재 일본인의 토지소유자 총수는 992명, 그들의 소유지 총면적은 1억 5,600만이었고, 이 방대한 면적은 국내에서 가장 비옥한 안산, 광주, 전주, 해남, 동래, 수원, 영암, 창원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旧조선 내에서 현물출자(現物出資)로 1,710만평을 동양척식소유(東洋拓植所有)로 하였으나 갈수록 日本・日本人의 토지소유는 방대해졌다.

또한 토지소유로 인하여 생기는 수확량·소작미·종자대·비료대 등의 이익 또한 일본인에게 돌아간 반면 수세(水稅)·지세(地稅) 그리고 기타 공리금(公理金) 등은 모두 약탈당한 농민에게 부담시켰다.

그 후 1910년 4월에서 1918년 1월에 끝난 소위 조선토지조사사업(朝鮮土地照査事業)은 한국인의 토지를 공공연하게 빼는 사업이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동양척식 소유토지를 제외하고는 일본인 토지소유자 총수는 992명, 소유면적은 1억 5,600만평이던 것이 이 사업이 끝나기 3년 전인 1915년에는 일본인 토지 소유자가 9,699명으로 10배가 증가하였고, 소유면적은 6억 2,700만평으로 4배나 증가하였다. 여기에 당시 東洋拓植所有土地 2억 1,000만평을 가산하면 8억 3,400만평이나 되었다.

8·15 해방직후 일본인소유토지의 총면적은 12억 평이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그들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토지소유의 재편성과 그들의 수확체계의 기반을 확립한 것이었다.

이상은 식민지 지배 때의 전반적인 일본의 토지 소유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 토지소유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부산에 日本租界를 설치한 후 부산 거주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곳은 조계(租界)의 배후지가 아니고 그 대안(對岸)인 절영도였다.

39) 김용욱 「부산개항과 일본인의 토지소유권」 『한국사법행정학회』 67, 1989.

일본정부는 1885년 12월 25일부로 절영도 4,900평을 일본 해군의 저탄창 고용으로 조차한 바 있다. 그 후 일본인 迫間房太郎가 1892년 절영도를 5만원으로 매수하려고 기도한 바 있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중단하였다. 1898년에는 절영도 국유지 135만평을 조선정부로부터 식림대부(植林貸付)형식으로 허가 받았다. 그 중 75만평은 일본 육군성이 요새지용으로 회수하였으며, 60만평은 8·15해방 전까지 迫間房太郎가 소유하고 있었다.

迫間房太郎는 1880년 大阪 무역상 五百井商店의 부산지점 지배인으로 부산에 와서, 1905년 독립하여 토지 가옥의 매매·대차업(貸借業)·곡물무역업·창고업·수산업 등을 경영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昭和 초기에는 「조선재계의 중진」으로, 제1급 자본가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의 자본 형성·축적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성공의 기반이 러일전쟁 때에 일본군부의 앞잡이가 되어 군용지의 강탈에 암약했다는 점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토지소유로 전환한 것은 1918년부터이다. 그의 토지소유 규모는 1925년 222정보(1정보는 약 300평), 1929년 1,323정보로 증가하고, 1931년에는 4,435정보로 확대되었으며, 수전(水田)만 2,500정보에 달하는 대표적인 세국주의자 지주였다. 그의 진영농장을 중심으로 1931년 6월에서 1932년 2월까지 전개된 迫間農場爭議는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었다.

1896년경부터 일본인의 절영도 내 토지매점이 왕성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1896년 9월 23일 동래감리 민영돈(閔泳敦)은 「금년 6월 한 달 동안에 일본인과 매매하여 영선동 좌기청(座起庁) 모전답(牟田畓) 200여 두락(斗落)과 가사(家舍) 9칸이 일본인에게 매입되었으니, 이를 금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서 온 섬 안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부대신 이완용 앞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고도 정부는 이렇게 할 대책이나 지시가 없었던 것 같다.

4년 후인 1900년(광무 4)에 절영도 동북부 90만㎡ 넓이의 지역을 각국 공동지계로 책정해야 할 필요성에 쫓긴 정부의 「일인에게 이미 매각한 토지를 조사하고 매각자에게는 이의 환매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는 이의 매각은 일체 못하도록 하라」는 훈령을 받은 동래감리가 그 해 8월 7일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때는 늦어 막대한 토지가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간 후였고, 또 그의 환매조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당시 절영도 내에서의 일본인의 토지소유 실태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절영도내 일본인 토지소유 실태(1930년 조사분)

所有者名	地目	筆數	면적 (斗落)	所有者名	地目	筆數	면적 (斗落)	所有者名	地目	筆數	면적 (斗落)
迫間	垈	7	6.9	岩田	垈	2	0.1	田	4	3.7	
	沓	5	10.3		沓	4	0.9	岩學	田	1	7.0
	田	30	167.9		田	4	17.6	吾島	垈	1	0.3
大池	垈	2	74.2	村上	垈	1	0.6	沓	1	6.0	
	田	8	74.0		沓	4	19.0	田中	垈	1	0.8
齊藤	垈	1	0.7	森木	田	4	18.2	田	3	5.4	
	沓	2	2.2	山西	垈	2	0.3	布井	田	1	6.0
	田	16	93.5		沓	1	0.3	宗里	田	3	5.6
岩鶴	垈	1	2.0		田	8	14.9	田	2	2.5	
	沓	4	11.6	力武	田	3	16.2	小倉	垈	1	0.2
	田	7	56.4	倉中	田	3	15.5	田	1	0.0	
中村	垈	2	16.9	東	田	1	15.0	那須	垈	2	4.2
	田垈	4	46.0	秋夜	垈	3	2.2	神岐	田	1	4.0
梁田	沓	3	3.5		田	6	10.5	標山	新築	1	3.0
	田	16	5.5	岩崎	沓	1	0.9	武末	場	2	3.0
	垈	35	46.65		田	2	10.3	葉田	田	1	2.8
竹下	田	2	0.5	長剛	垈	1	1.4	森夜	田	1	2.5
	垈	8	46.8		沓	1	0.3	倉田	垈	1	2.3
下條	沓	1	2.0		田	5	10.6	松原	垈	1	0.5
	田	9	8.4	朝元	田	1	10.0	垈	1	1.7	
	田	8	31.3	二宮	田	3	10.0	梶谷	田	1	1.5
木村	垈	3	36.1	藤波	沓	5	8.7	信原	田	1	1.3
小宮	沓	4	3.8	堀江	垈	1	1.2	柴田	垈	1	0.9
	田	1	0.5		沓	1	0.3	仁直	垈	2	0.9

所有者名	地目	筆數	면적 (斗落)	所有者名	地目	筆數	면적 (斗落)	所有者名	地目	筆數	면적 (斗落)
永島	岱	13	30.6	下野	田	2	6.0	伊藤	岱	1	0.4
	沓	1	2.0		岱	1	0.0	梶山	岱	1	0.4
	田	4	6.7		沓	3	0.4	福田	岱	1	0.1
	田	10	23.6		田	3	4.1	山本	岱	1	0.1
中野	田	4	32.2	倉城	岱	1	0.3	日本人計	沓	57	1 66.4
櫻井	岱	5	24.8		田	5	7.1		岱	67	100.2
中上	田	1	23.0	永瀬	岱	1	0.5		沓	248	1,057.3
黃木	岱	4	22.8		沓	1	0.0		田	1	3.0
洋人 淡孫	田	2	44.0	洋人 梁大人	沓	1	0.2	外國 人計	기타	60	210.6
洋人 姜大人	岱	1	36.0		田	3	5.1		岱	69	100.9
	沓	1	0.2	西洋 人計	岱	3	44.2		沓	256	1,107.5
	田	1	0.5		沓	2	0.7		田	1	3.0
	田	4	9.1		田	8	50.2		기타		

출전: 『慶尚南道東萊府絶影島山麓草場家岱田沓人口區別成冊』

<표 12>에서처럼 절영도 전역에 외국인 소유가 된 토지는 386필지 1,422두락에 달하며, 그 중 서양인의 토지는 불과 13필지 95.1두락에 불과하고, 일본인이 373필지 1326.9두락을 소유하여, 절영도 전역의 노른자위 땅은 일본인들이 거의 침략하여 빼앗아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절영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은 迫間이고 다음이 大池라는 점이다. 迫間는 전술한 迫間房太郎을 가리키고, 大池는 大池忠助를 가리킨다. 大池忠助는 일본 長岐현 村馬島蔽原町에서 태어나, 1875년 부산에 들어와서 해산물 무역업을 경영하는 한편 미국 및 잡화를 직수입하고 정미공장도 설립하였다. 1881년 이후 부산거류민회의 원 및 부산상공회의소의원을 위시하여 민단의장, 상공회의소회두, 부협의원, 일본 중의원의원 등 공직을 역임하였다. 그 후 경상남도평의원, 부산

변영회장, 부산곡물시장취체역, 부산수산물회사사장 및 구포은행취체역등을 역임한 조선재계의 중진이었다.

香稚源太郎와 함께 부산의 3거두(巨頭)라 할 수 있는 迫間房太郎, 大池忠助가 절영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무역업·창고업·수산업 등 자본가로서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토지의 집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외에도 부산의 일본인들이 침점한 토지는 절영도 뿐만 아니라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청·보수·대신·부민동 일대, 동쪽은 영주·초량·수정·좌천·범일동 일대에 걸쳐 원매자(願売者)만 있으면 거의 남김없이 사들였다. 일본인 중에는 한국정부의 소유인 공용목장(公用牧場)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공터가 된 것을 기화(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자기들이 침점하여 집을 짓는 사례가 있는 한편, 간교한 한국인이 문중재산이나 공동묘지 같은 것을 개인 재산이라 속여 일본인들에게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민동 시장(柴場)이었다가 부평동의 신설로 부평동민 시장(柴場)이 된 대원봉(大圓峰) 산기슭 부평동에 거주하는 조경화(趙景化)·윤래현(尹來顯)이 개인 재산이라 속여 대원봉 서쪽은 당시 부산해관 번역사로 있던 竹下佳隆, 남쪽은 福田増兵에게 250냥을 받고 매각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福田의 소유가 된 부분은 그 후 향양원(向陽園)이란 별장으로 꾸며져 한말·일제하에 부산거류 일본인뿐 아니라 伊藤博文을 비롯한 일본 명사들이 휴연을 벌였던 명소가 되었다.

일본거류지의 서변 일대는 조선시대 이래로 정부 소유의 목장이었다. 그러나 1890년에 목장이 절영도로 이선했기 때문에, 1893년 6월 동래부에 거주하는 현학두(玄學斗)가 채시(採柴)·양잠·삼림·경영·개간을 목적으로 허가를 정부에 청원, 농상공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현학두는

인가장을 근거로 동래부사로부터 지계(地契)를 교부받아 토지개간에 착수했다. 이때 개간의 허가는 광대한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 뒤인 1894년 6월 토지개간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든다는 이유로, 다시 특전을 얻었는데도 여의치 않아 당시 법무법리 기초위원(法部法理基礎委員)이었던 조카 현영운(玄映運)에게 양도하였다.

현영운은 1896년 개간으로 인해, 그 지역 내 동민의 분묘와 채시(採柴) 때문에 동민과 충돌하여 원성을 샀다. 분묘문제는 분묘지역을 측량·확정하여 보전케 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채시권(採柴權)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시장(柴場, 땔감나무)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 토지는 그 뒤 홍중섭(洪仲燮)에게 양도되었는데, 홍중섭은 1900년 이를 일본인 阿比留護助에게 양도하였다. 그 뒤 그는 이 토지를 양도 받아 동래부사로부터 1900년·1901년에 지계(地契)를 교부 받아 지세를 동래부에 납부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일본거류지 동변 일대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거류지의 동변(東邊) 일대는 청국전관조계(淸國專管組界)가 있었고, 또 영주·초량·수정·범일 각동은 예부터 한국인 고유의 부락이 산재한 곳이므로 일본인의 토지침점이 비교적 늦었다. 이곳 일대의 토지·가옥에 격변이 일어난 것은 부산이 경부철도의 기점이 되고 부산진과 초량에 역사부지를 비롯한 대규모의 철도용지가 강제수용 되면서였다.

당초 일본의 철도건설 당국이 초량·부산진 지역에서 확보한 토지는 초량 8만 여 평, 동 해면(海面) 8만 여 평, 부산진 21만 여 평으로 합계 37만 여 평에 달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우려한 조선정부 철도원의 끈질긴 반대로, 후일에 필요하면 새로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초량 5만 여 평, 부산진 3만 여 평의 토지가 강제 수용되었고, 그 결과 초량에서만 600 여 호의 한인가옥이 철거되었다.

경부철도의 개통을 알아차린 일본인들은 한국인 소유 토지 중 원매자(願売者)가 있으면 이를 마구 사들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동래감리각면서보고서』 중 「釜山面上尊位報告書」와 「沙中面上尊位報告書」이다. 이에 따르면 1905년 3월 19일에서 1905년 12월 말까지 10개월 사이에 범1·2리, 좌천리, 두중리, 두모리, 노하리, 수정동, 산수동 등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토지·가옥을 매매한 것은 55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수인에게 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55건 중 迫間房太郎(박간방타로)가 6건, 小峰虎吉(소봉호길)가 5건, 大池忠助(대지충조), 齊藤孝藏(사이토카쿠조), 藤本万藏(후지모토만조), 豊泉德治郎(요스이토크치로), 萩野米吉(하리노메길)이 각 3건씩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1905년 5월 27일에서 12월 말까지 7개월 간 부산진, 영주동, 초량동, 구관에서 일본인에게 매매된 것이 16건인데, 여기서도 迫間房太郎(박간방타로)가 5건, 大池忠助(대지충조)가 3건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도 절영도와 마찬가지로 迫間房太郎(박간방타로)·大池忠助(대지충조)와 같은 당시 부산 최고의 부호들에 토지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기사로 수 년간 부산에 와 있었던 相沢仁助(사이자와니조)는 1905년 발간한 『釜山港勢一斑』·『韓国二大港実勢』에서, 당시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관(전관지) 내 11만평, 거류지 외 5,381,714평(공용지 1,000,000평, 민유지 4,350,000평, 매립지 31,714평)에 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러·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부산 시내 요지는 거의 모두가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IV. 일본인들의 조직 변화상과 활동

1. 거류민들의 변화

당시 재한외국인거류지중 일본인전관거류지가 가장 우세하였다. 특히 1905년 이후 일본의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더욱 일본인이 급증하고 강제로 합법적인 자치와 거주권을 얻게 된 이후로는 명실상부한 침략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거류지안에 민단조직체로 그들의 강력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졌다.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의 사회단체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지만 『부산요람』(1912년)에는 특종단체 후에 7개의 사교기타단체와 부인단체로 나누고 있으며 『경상남도 안내』(1914년)에는 재정 후에 공공단체 경비 節에 付, 학교, 수리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단체 후에 일본적십자사, 애국부인회와 자선단체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1873년 일본 외무성은 출장관을 거류민중에서 1명을 뽑아 파견형식으로 이를 보장(保長)이라 하여 사무취급, 자치사항을 담당하게 하였다. 1876년 수호조약을 체결로 관리청을 설치하고 파견한 관리관 감독 하에 회의소(會議所)란 것을 설치하여 용변을 두어 일반공공 사무를 취급하며 왜관주(倭館主)와 교대하다가 1880년 관리관제가 폐지되고 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 시기 부산 거주인 본인이 2천명을 상회하게 되는데 다음해 거류지 제도를 발표하고 거류지회 의원을 두었다.⁴⁰⁾

1881년 부산영사는 「거류지편성규칙」을 발표하여 총대역소(總代役所)를 신설하고 호적, 토목, 위생, 교육, 신사 및 전반적인 자치사항을 처리하게 하고 또 대의기관을 두어 공공사업과 그 경비집행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그 뒤 1887년 영사관은 「거류민규칙」을 제정하여 공공영조물 기타 재산의 공유권리, 공공부담의무, 거류민회 조직권한, 거류민장관리사무 등을 규정하였다.

40) 부산부 『부산부세요람』 p.6, 1923.

또한 1906년 「거류민단법」이 실시됨에 따라 1906년 통감부고시 제 76호로서 거류민단이 조직되었다. 이 거류민단은 일본정부의 보장을 받은 자치기관으로서 새로이 발족하여 그 조직도 총무, 서무, 토목, 징세, 회계, 수도의 6개 처로 분장되어 부산의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⁴¹⁾

거류민단의 활동은 크게 토목, 교육, 위생, 소방으로 나눌 수 있다. 토목 분야에서는 도로, 교량, 우물 등의 보수 외에 매축사업을 벌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당초 사원의 자선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거류지비에 의해 초등, 실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업무는 민단 폐지이후에도 학교조합으로 계승되었다. 위생분야에서는 민단립병원(民團立病院)의 설립, 촉탁 의사의 초빙, 위생조합규칙의 제정, 유행병 예방비등의 계산 등이 있다. 부산의 일본 거류민단의 사업이 가장 활발해지는 1905년 이후의 사업표(시행과 예정)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부산 거류민단의 사업

년 도	공사명	공사금액 (원)
1905	피병원개축	7,233
	대청산·복명산배수공사	8,196
	부산심상소학교건축	33,938
1906	초량심상소학교증축	2,801
	부산심상거등소학교건축	39,072
1907	상업학교신축	32,559
	선관거류지내도로공사	64,504
	부산심상소학교 절영도의 분교	8,865
1908	감옥서이전공사	4,940
	초량 및 절영도소학교증축	11,000
	공원설비	2,217
1909	건강진단소신축	3,213
	병원신축	36,611
	거등소학교신축	36,500
	영선산착평 및 매축공사	1,070,000
1910	사하면신시가지정비	20,000
	수도부지	1,000,000
	절영도신시가지정비	50,000

자료 : 허만형 「한국부산의 도시형성과정과 도시시설에 관한 연구」 1993.

41) 박원표 『개항 90년』 p.24, 1966.

이 시기(1905) 거류민단의 인구비율은 부산(15,703), 인천(12,937), 경성(11,724), 원산(5,120), 평양(4,530)의 순서인데 강화도 조약에서 명시된 3개 개항장에 경성·평양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거류민단의 조직은 「거류민단법」⁴²⁾에 의해 한국내의 개항장과 개방된 잡거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법인체로서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조약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류민단 내에 행정담당 이원, 즉 官吏의 의회적인 거류민의회를 두며 거류민회의 조직, 거류민회 이원, 거류민의회 의원의 임면, 선거, 임기, 급여, 직무, 권한과 거류민단의 재산, 부채, 영조물, 경비, 회계 관계 등은 명령으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거류민단법의 실시와 함께 거류민단이 침략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영업규칙도 따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인 이주정책은 더욱 강력히 추진되었다.

거류지의 조직과 구성임원을 살펴보면 거류민단법 이전까지는 많은 경우 10여명 정도, 적으면 5-6명이 매월 교체되었다. 지역에 따라 명칭 그대로 서비스직, 명예직, 유급직, 윤번제 등으로 保長, 用番, 頭位, 總代, 保長頭取, 保長總代, 居留民總代, 居留民長, 居留地總代, 民長, 이사, 掛長, 평의원으로 불렸다.

그 외 부산 거류민단의 구역과 인구수와 부산거류민단의 吏員 및 거류민단 의회의원 선거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1905년 3월 일본국 법률 제41호로서 전문 6조의 「거류민단법」을 공포하고, 1906년 7월에는 통령 제21호로서 전문 6장 5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거류민단법시행규칙」과 「설시요강」을 공포하였으며, 통감부령으로 실시하였다.

<표 14> 부산 거류민단의 구역과 인구수

명칭	관할 이사청	민단구역	호수	인구	설립년도
부산거류민단	부산	부산전관거류지 절영도, 초량 부산진구관	3,933	15,702	1906
			4,232	16,04	1907
			5,083	19,666	1908
			5,544	21,097	1909
마산거류민단	마산	신마산 구마산 및 거류지 부근	677	2,576	1906

자료 : 歴史学研究会 「구한말 외국인 거류지내 상황」 『史叢』 12-13합집 228쪽에는 인구수가 21,057로 나와 있음.

부산 거류민단의 인구수는 1906년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산에 비하여 부산 거류민단의 수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 1950년 부산거류민단의 吏員 및 거류민단의회의원 선거자수

	유권자 수	민 장	助 役	회 계 역	서 기	고 용 원	임 시 고 용 원	청 소 원	촉 탁 의 사	기 사	기 수	화 부	측 량 공 부	도 로 공 부	公 園 園 丁	식 림 감 독	소 사	금 사	區 總 代	계
경성	5,461	1	1	1	23	32	5													63
부산	1,749	1	1	1	23	10			1	1	4	2	6	3	1	2	8	3	9	76
인천	1,166	1	1		10	6		1												19

자료 : 이현종 「구한말 외국인 거류지내 조직체에 대하여」 p.19
『역사학보』 34, 1969.

이러한 거류민단은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한일합병이후 재한일본인거류지는 그 성격이 일변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조일본인전관거류지는 지금까지 조선땅이란 외국의 영토 안에 있었

지만 조선땅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주권자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조선땅은 이제 일본영토의 일부가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조선땅에 설정하였던 일본인전관거류지는 폐지시키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류지내에 존재하였던 거류민단은 합병 후에도 당분간은 그대로 존속되어왔다. 그러다가 재조외국인거류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측은 재조외국영사들과 협의 하에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해나갔다.

따라서 한일합병이후로 이제부터는 재조일본인거류민단은 불필요하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재한외국인거류지를 폐지시키는 동시에 재한일본인거류민단도 해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치폐에 이르렀는데 이는 한반도를 완전히 자신들의 식민지적 통치의 산물로 삼는 계획적인 침탈행위였던 것이다.

2. 사업 분야와 분포

거류민단의 활동은 교육, 위생, 소방, 토목으로 나눌 수 있다. 토목 분야에서는 도로, 교량, 도랑, 우물 등의 관리와 보수 등, 매축 사업을 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당초 사원의 자선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거류지에서 나온 돈으로 소학교 교육, 실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업무는 거류지의 민단폐지 후에도 학교 주합으로 계승되었다.

위생 분야에서는 거류민단 병원의 설립, 축탁 의사의 초빙, 위생 조합의 규칙 제정, 유행병 예방 등이 있었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 기구의 구입, 소방조의 편성 등과 경찰 기관으로

서의 기능도 함께 하였으며, 그 외에도 신사의 신축과 관리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들의 주요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거류민단의 주요사업

소학교 건축, 배수공사, 상업학교 신축, 용미산 신사 개축, 건강진단소 건축, 수도부설, 매립 공사, 민단립 병원 확장, 소방시설, 고등여학교 신축, 건강진단소 증축, 전염병원 이전, 도로 측량, 병원 신축, 공원 설비, 감옥소 이전, 기타

자료 : 부산 상업회의소 『부산요람』, 1912.

거류민단이 설치된 개항장에는 거류민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 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성의 경우 1889년 소방펌프 1대를 비치한 것이 우리나라 일본인 소방조의 시초가 되었다. 이어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까지 각 개항장의 영사관 규칙으로 소방조규칙이 제정 실시되었고, 일본인들은 관민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펌프를 구입하고 설치하면서 경성의 경우 이사청령 제1호로 경성 소방조규칙을 제정 시행하였고 부산은 1909년 종전의 영사관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사청령으로 소방조규칙을 제정 실시하였다. 이것은 통감부의 인가 하에 조직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 이외에 일본인 거류민들의 자발적인 조직까지 생겨 점차적으로 거류민단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 이외에도 왕에 대한 충성과 자기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신축 등이 결행되었다. 일례로 러·일전쟁 때에는 전쟁 촉구 성명 발표, 의용병 조직 등이 이루어 졌다.

부산지역 일본인은 법에 의해 조직된 거류민단이 조직되기 이전까지 일본인이 거주하던 곳에는 일본인들의 모임인 거류지회가 있었다. 거류민단

으로 볼 수 있으나, 거류민단처럼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생적인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일본인회라고 하였다. 일본인회는 거류민단과 똑같은 일본인 모임이지만 법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친목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거류민단과 구별되어 진다.

이 단체는 주로 조선에서 철도 주변이나 상업권요지에 있었다. 이것은 짐작하건데 전관 거류지 내에 일본인 권력과의 밀착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인회가 조직된 곳은 전관 거류지 설정 지역과 달리 일정한 규정에 의한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인회의 조직시기가 다르며, 둘째, 거류민단이 조직된 곳에서는 거류민단 관할 지역 외는 거주자들이 따로 일본인회를 조직 한 것과 같다 셋째, 상업이나 생활근거를 찾기 위하여 조직하였으며, 넷째, 조선에 이주하여 같은 지역에 사는 민족의식에 의해 조직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적인 거류민단 활동 외에 사회단체의 조직으로는 사교단체와 기간사회단체, 사설위생단체, 자선·교화단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교단체로서 부산변영회는 1906년 12월 부산항의 유지들이 모여 부산항의 변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그 실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유력계급자를 망라하고 있었으며 민단이나 상업회의소처럼 당해기관에 대하여 실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부산변영회는 부산항의 일반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성사업 또는 공사기관의 시설경영 등을 발의, 제창하기도 하였다.

사교단체로서 부산상공墾話會는 상업회의소의 주장에 의해 1912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상의의원, 각 은행회사의 대표자 및 상공계의 유력자로 구성되었다. 이 회의 취지는 부산항 상공업의 중요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업자들의 일상영업상의 이해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청취하여 상의의 활동을 도우며 상공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효용과 상공업자들의 친

목을 돈독히 함과 동시에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조선실업동지회는 실업발달을 목적으로 부산 실업 동지회라는 명칭 하에 1909년 8월 부산항의 유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한일합병 후 이를 조선실업동지회라고 개칭하고 일본인의 융화친목과 부산항의 산업발달을 목적으로 협의회를 열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부 관내 거주의 토목건축 청부업자들의 조합인 부산공우회(釜山工友會), 부산지방법원의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성된 부산변호사회와 부산법조회 등이 있었다.⁴³⁾

이러한 사교단체 외에도 기간사회단체들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주도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일본 적십자사와 애국부인회 부산지부 등은 매우 유명한 단체들이었다. 이들 두 조직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민정신작흥운동, 자력갱생, 민력함양운동, 청소년단의 지도, 국민체육의 증진운동 등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인의 일본인화로 만드는 것이었다.

<표 17> 일본적십자사와 애국부인회의 부산·경남지부 현황-일부

단체명	시기/지역	일인	한인	외국인	합계
일본적십자사	大正2년 부산	994	209	32	1,235
애국부인회	大正2년 부산	908	71		979

자료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안내』 p.107-108, 1914.

경상남도편 『도세일반』 p.121, 1921.

경상남도편 『도세일반』 p.27, 1927. 『경남도세개람』 p.326, 1939.

사설위생단체로는 부산의사회나 부산간호부회, 부산산과회 등이 있는데 부산의사회의 경우에는 의사법에 규정된 의사의 자격을 지닌 부산거류민단 구역 내 거주하는 의사로 조직되었다. 그 목적은 의사의 품위를 보유

43) 부산상업회의소 『부산요람』 p.340, 1912.

부산감연회 『日朝通交史附부산사 근대기』 p.312, 1916.

부산부협찬회 『부산항세일반』 p.39, 1917.

하고 의사위생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인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었다.⁴⁴⁾

자선·교화 단체로는 부산자선교사나 부산보호원등이 있었는데 경상남도의 자선단체는 1913년 2월 말 현재 6개소로 면수(免囚,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사람)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 2개, 빈민구휼을 목적으로 한 곳이 4개소이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창립당시부터 열심히 활동했지만 성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다. 이 시기 부산지방의 자선단체와 사회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⁴⁵⁾

<표 18> 부산지방의 자선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설립년월	목적	관리책임
부산보호원	서대신동	명치44년 12월	면수보호	卞川正義
부산자선교사	서정	명치 9년 12월	빈민구휼	大辛淨慧

자료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안내』 p.109-110, 1914.

이상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일본인들로 이루어진 부산지역 내 일본인사회의 거류민단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들을 알 수 있었다. 부산 거류민단은 관청과 인민사이의 사무를 취급하는 업무로부터 시작하여 토목, 교육, 위생, 소방의 업무들을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기타 사교단체와 기간사회단체, 사설위생단체, 자선·교화단체 등이 일본인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예하의 공식적인 조직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각종의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44) 부산상업회의소 『부산요람』 p.82-84, 1912.

부산부협찬회 『부산향세일반』 p.39, 1917.

45)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안내』 p.109-110, 1914.

V. 결 론

이상에서 3항(부산·원산·인천)의 개항 이유와 거류지 내의 일본인과 부산 사람의 인구형태와 직업 그리고 일본인들의 거류민단 조직 변화상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19세기 서구의 여러 국가들이 여러 가지 내적요인에 따라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형성해 간데 비해 우리나라는 특히 외세의 압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도시의 구조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원산과 인천은 군사적 목적이나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거점을 둔다는 등의 목적을 두고 무리하게 개항시켜 일본인들을 상주시켰으나 부산은 일본과 가깝다는 점과 함께 무역통상항(貿易通商港)으로서의 개념이 강하여 자연적으로 세력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그와 더불어 모든 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며 군사적 전초기지로서의 활용까지 아우르게 된다.

부산은 개항장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항이 되어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항 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일본인 식치를 형성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차원의 전반적인 불평등조약을 근거로 부산에 일본인 사회를 조성해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강화도조약에 따라 왜관이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로 개방되고, 이어 부산에 일본영사관이 설치되자 외교는 새로운 근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부산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관서로 부산감리를 설치하여 부산의 주권 및 그에 수반되는 행정권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래(부산) 경무서(警務署)나 부산 개항장 재판소, 부산 해관(釜山海關)등을 두어 일본인들에 대한 단순한 보호나 외교교섭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준영토·준식민지 행정을 부산의 일본단독조계

(日本單獨租界)를 중심으로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업·상사규칙, 토지·가옥, 기타 인사규칙, 교육·경찰·위생·병원·선박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던 것이다.

부산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이주·정착한 것은 1876년 9월 14일 정대신포고(政大臣布告)128호가 공표(公表)된 후부터이다. 부산에서의 일본인 이주는 지리적 이동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본 내 지역경제의 조건, 정치적 조건 등이 부차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산은 한반도내 대륙침략의 거점인 식민도시로 출발하였지만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상공업적인 기반과 함께 경상남도의 지방 거점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산의 일본인 인구 구성비는 계속 감소했으나 다른 주요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자로서 월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노동에 종사하는 자도 상당히 많았다.

일본인주거지는 매년 이주하는 일본인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지가 협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영사는 주거지확장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영도 뿐만 아니라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청·보수·대신·부민동 일대, 동쪽은 영주·초량·수정·좌천·범일동 일대에 걸쳐 원매자(願売者)만 있으면 거의 남김없이 토지를 사들여 토지확장을 해나갔다. 따라서 러·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부산 시내 요지는 거의 모두가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또한 개항 전부터 초량왜관을 거점으로 무역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은 강화도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하였다. 1876년 이래 일인상인이 대거 부산에 왔는데, 개항 당시 부산에 살고 있던 일본인은 40여 호에 80여명이었고, 공관관리(公館管理) 및 잡직자 12명을 제외하고

는 모두 상인이었다. 이들 일인상인 중에는 상업과 고리대업을 통해서 획득된 자본을 점차 토지에 투자하여 토지수탈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직업구성에 있어서 상업이나 관공서, 유통업에 많이 종사하고 부산 사람은 농업이나 일용직 같은 일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류민단은 일본 정부의 지시에 의해 공공 사무를 처리하고 거류민단을 침략의 거점으로 이용한 듯하다. 이 민단이 조직되기 이전까지 일본이 거주한 곳에는 일본인 모임의 거류지회가 있었다. 거류민단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거류민단처럼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조직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일본인회라고 칭하였다. 거류민단의 활동은 주로 소방, 위생, 교육, 토목 등에 활동하였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 기구의 구입, 소방조의 편성 등과 경찰 기관으로서도 기능을 하였으며 신사의 신축과 관리도 함께 하였다.

토목에서는 도로, 교량, 도랑 우물 등의 관리와 보수 외에도 매축 사업을 하였고, 교육에서는 처음에는 사원의 자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초등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 분야에는 민단립 병원의 설립, 의사의 초빙, 위생 조합 규칙의 제정, 유행병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공식적인 조직과 함께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각종 단체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획득하고 식민지 지배를 더욱 쉽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일본인의 사회단체활동들 중에는 부산거류민단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들 수 있으며, 자치적인 거류민단 활동 외에 사회단체의

조직으로는 사교단체와 기간사회단체, 사설위생단체, 자선·교화단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예하의 공식적인 조직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각종의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데 복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부산은 처음부터 개항지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두 곳을 정한다는 원칙만 세우고 제반 여건이나 정치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서 나중에 결정하기로 한 후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원산과 인천은 주로 군사적 성격과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둔다는 목적이 강했다.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늦게 개항했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상주했기 때문에 일본은 침략의 목적으로써의 개항이 아니라 외교의 장으로 인천을 사용했다. 그러나 부산은 이와달리 가장 먼저 개항되었으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왜관이 있었으며, 무역통상(貿易通商)관계 뿐만아니라 그들의 생활터전, 군사적인 전초기지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를 망라해서 발전해 나갔다. 이것은 부산이 다른 어떤 개항장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신문

釜山時報社『朝鮮時報』1894-1904・1914-1940.

釜山日報社『釜山日報』1915-1944.

2.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

統監府 地方部『居留民団 事情要覽』1908.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 施政年報』1910-1940.

朝鮮總督府『居留民団』1945.

朝鮮總督府 農商工部『釜山方面商工業調査』1911.

朝鮮總督府『釜山府關係書類』1927.

朝鮮總督府『朝鮮の人口統計』1935-1939.

朝鮮總督府『昭和8・9年 朝鮮の人口統計(2판)』1935.

朝鮮總督府『昭和13年 朝鮮人口動態統計』1940.

朝鮮總督府『在朝鮮 居留地關係 取極書』연도미상.

釜山府『釜山開港50年記念号』1926.

慶尙南道『慶尙南道報』1926-1942.

釜山府『釜山府社会施設概要』1927.

釜山府『釜山』1927-1929.

釜山府『釜山府史原稿』1-6, 1927.

釜山府『人事相談職業紹介所 共同食堂共同宿泊所關係書類』

1927・1929・1938.

釜山府, 内務係『釜山衛生施設概要』1928.

釜山府, 産業界『公共組合關係書類』1929.

釜山府 『釜山商工案内1』 930-1935.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2・1934-1935・1937-1938・1940・1942.
 釜山府 『釜山港と税関』 1936.
 釜山府 『釜山府臨時産業調査会各部関係調査資料』 1936.
 釜山府 『朝鮮釜山府例規類集』 1937.
 釜山居留民団 『釜山龍頭山神社御昇格願書』 1908.
 日本居留民団 『釜山日本居留民団例規類集』 1909.
 釜山居留民団役所 『釜山居留民団要覧』 1910.
 釜山居留民団役所 『釜山日本居留民団植林誌』 1912.
 釜山商業會議所 『釜山要覧』 1912.
 釜山商業會議所 『釜山史研究論叢』 1929.
 釜山經濟調査会 『釜山史研究論叢』 1932.

【국내논저】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약사』 1965.
 박원표 『개항90년』 태화출판사 1966.
 김의환 『조선 대일 교섭사연구 -강화도조약과 부산개항을 중심으로』
 통문관 1966.
 김의환 『부산 근대도시 형성사 연구 -일인 거류지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문출판사 1973.
 김의환 「부산개항의 연구(상, 중, 하)」 『항도부산』 3・4・5, 1963-64・
 1966.
 박원균 『부산금융사』 아성출판사 1969.
 釜山市 『釜山略史』 1969.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의사』 1982.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의 상공업 백년』 1989.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4, 1989-92.
- 김대상 「개항 직후 부산의 사회문화 -합병기까지의 시설면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6, 1967.
- 이현종 「한말 일본인거류민단의 치폐경위」 『편사』 1, 1967.
- 이현종 「구한말 외국인 거류지 내의 조직체」 『역사학보』 34, 1967.
- 박헌철 「開港期 釜山港을 中心으로 본 日本人의 商業活動」 부산대 역사
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5.
- 부산경남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1999.
- 이원균 『부산의 역사』 늘함께 2000.
- 이영·김동철·이근우 『전근대 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출판부 1999.
- 장순순 『조선시대 왜관변천사 연구』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김호일 『한국개항 전후사』 한국방송사업단, 1982.
- 김용욱 『한국개항사』 서문당, 1978.

The private investigation against the population influx
and a social activity

Kwang-jae, Le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still remains the traces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in Busan even though it has finished 60 years ago. However, studies about Japan have focused on the 'domination of the colonist and protest of the Korean people', and they have limitation of th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omination itself.

Also, the study on if the change of Busan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had effected as a stimulation of the development or retrogression is worth researching. It could not help having limitation if the study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policy is not focused on the inner structure of the ruling cla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pening of the three ports(Busan, Wonsan, Incheon), the capita state and processing order of the acquisition for residence of Japanese and Korean in Busan, and the change of the Japanese system and its action in the domicile. For the first step, it examines the history of the Busan and the three ports after the Kang-hwa island treaty. Second, it finds the inflow of the Japanese capita to Busan and their formation and the kinds of the jobs they had. Third, it inquires into the orders of the acquisition for their residence and the order of purchasing land. Fourth, for the change of Japanese capita in their group system and ac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inhabitants and their business sectors is studied.